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2022. 2. 18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2. 18.(금) 08:30
담당 부서	정보고객지원국	책임자	과 장 김용훈 (042-481-5460)
	정보고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최상원 (042-481-8336)

개인·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립니다 - 특허청,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2월 18일부터 시행 -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·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(금) 밝혔다.
-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개정안에 따르면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% 추가감면*을 받게 된다.

< 감면율 예시 >

구분	기존		개정
개 인 (19세 이상 30세 미만)	감면율 85%	→	90% (기존감면율 85% + 추가감면(15%×0.3))
중소기업	감면율 70%	→	80% (기존감면율 70% + 추가감면(30%×0.3))

- 반면,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.

- 한편,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·개척(벤처)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(IP)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(인센티브)을 더욱 확대한다.

-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(질권설정 등록료)을 대폭 경감*하였으며,
 - * 질권설정 등록료: (현행) 8.4만원 → (개정) 2만원(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)
- 담보 지식재산권(IP)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·유지비용을 면제*하였다.
 - *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및 3에 따른 특허료·실용신안료,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
- 더불어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하였다.
 - * (현행)'22년 2월말까지(4~6년분) → (개정)'26년 2월말까지(4~9년분)
-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*하였으며,
 - * 서면출원: (현행)7.2만원 → (개정)6.6만원
-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,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·명료화했다.
-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이번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·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·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.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·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① 「특허법」·「디자인보호법」 개정('22.2.18 시행)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인·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

- 국가적 재난 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사회적·경제적 약자의 특허 발명(디자인 창작) 장려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

*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30% 추가감면

< 감면예시 >

- ①개인(19세 이상 30세 미만)출원료: 기존 감면율(85%)+추가감면(15% $\times$ 0.3) = 90%
- ②중소기업 출원료: 기존 감면율(70%)+추가감면(30% $\times$ 0.3) = 80%
- ③중소기업 연차료: 기존 감면율(50%)+추가감면(50% $\times$ 0.3) = 65%
- ④(공동출원) 재난지역內 출원인(80%)+재난지역外 출원인(70%) / 2 = 75%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에 대해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생방지

-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금액의 2배액을 징수하고 일정기간(1년) 징수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을 배제

②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

- 중소기업 대상 IP금융 활성화를 위해, 금융권의 질권 설정등록 비용 및 담보IP 매입·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·유지비용 등 경감

구분		현재(AS-IS)	향후(TO-BE)
IP금융	질권설정	질권 설정등록료 : 84천원	질권 설정등록료 : 2만원 (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)
	담보IP 매입·활용	(신설)	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및 3에 따른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,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

-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(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)의 지식재산역량 향상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

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
및 지식재산 경영인증
기업

일몰 : '22년 2월 말일까지
감면 대상기간 : 4년~6년분
(특허료·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료)

일몰 : '26년 2월 말일까지
감면 대상기간 : 4년~9년분
(특허료·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료)

③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

-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정확한 고시명칭을 기재하여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(72천원 → 66천원)

* 전자출원의 경우 정확한 고시명칭으로 출원시: 62천원 → 56천원

④ 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

-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'최종 납입할 금액'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
- '고객 전용 입금 계좌'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

⑤ 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

-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,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도모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	제7조(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중 략)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.	①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	1.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:

현 행

다른 의료급여 수급자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개 정 안

별표 4와 같다.

2.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:

별표 5와 같다.

< 별표5(일부발취) : 상시 감면대상 >

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

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감면대상		감면율	
		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등록료	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·등록료
개 인	1.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	100분의 85 (권리유형별·절차별 각각 연간 20건)	100분의 50
	2. 65세 이상인 자		
	3. 그 외 개인 (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외)	100분의 70 (권리유형별·절차별 각각 연간 20건)	
	4. 중소기업	100분의 70	

-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를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경우 감면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확대
- 공동출원인 및 권리자에 대한 평균감면율을 우선심사신청료 및 연차등록료까지 확대